

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
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5
------	----

2023. 9. 15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가. 청원자 :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김태형 외 1,684명
- 나. 소개의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(국민의힘, 송파1)
- 다. 접수일자 : 2023년 8월 29일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4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 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9.1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청원요지

-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
- 교통사고가 발생한 한가람로는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수송 대형트럭

통행이 빈번하며,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서, 풍납동 주민인 아산병원 교수의 사망사고가 난 곳이기도 함.

-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 보행육교 설치를 계속 요구했으나,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미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하면서,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거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삼표레미콘의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요청하며,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청원함.

Ⅲ.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(김규남 의원)

- 한가람로부터 이어지는 강동대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자 삼표레미콘의 대형트럭이 과속하는 곳으로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▶무단 점유 중인 (주)삼표산업의 퇴거, ▶문화재청의 규제 완화를 통한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를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함.

Ⅳ. 검토보고서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청원의 개요

- 동 청원은 서울아산병원, 풍성초·중학교, 풍납중학교, 송파세무서를 이용하는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, 토지를

무단 점유 중인 (주)삼표산업을 조속히 퇴거시키고, 올림픽대로 남단에 보행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임.

나. 삼표레미콘 퇴거 관련

- (주)삼표산업은 1978년경부터 현 풍납토성 내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고, 이후 문화재청은 2003년 7월부터 해당 부지를 포함한 풍납토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음.
- 이에 서울시와 송파구는 ‘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(2003년)’ 을 수립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장부지의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한바, 2020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음.
- 그러나, (주)삼표산업은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, 손해배상, 토지사용료 부당이득 반환, 공장 부지수용 사업인정고시 취소 청구 등 6건의 민사·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일부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(총 21,107㎡ 중 71.2%인 15,031㎡)하고 있음.

< 서울시 및 송파구와 (주)삼표산업 종결한 소송현황 >

연번	구분	사건명/당사자	사건 내용	진행상황
1	민사 - 공장부지	소유권이전 말소등기 (서울고법2018나2017714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서울시	<협의취득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> - 제소일 : '15.10.22.	- 1심 피고 승소 - 2심 피고 승소 종결 (20. 1.17.)
2	민사 - 사옥부지	손해배상(기) (서울고법2017나2058602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서울시, 송파구	<협의취득 부지 소유권 말소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> - 제소일 : '16.3.10.	- 1심 피고 승소 - 2심 피고 승소 종결 ('20. 1. 8)

연번	구분	사건명/당사자	사건 내용	진행상황
3	행정 - 공장부지	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(서울고법2017누90157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서울시, 송파구	<토지 무상사용권 확인·기납부 사용료 반환 청구> - 제소일 : '16.2.19.	- 1심 피고 승소 - 2심 피고 승소 종결 ('19. 21.)
4	행정 - 공장부지	사업인정고시 취소 (대법원2017두71031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국토교통부장관 (피고 보조참가 : 문화재청장, 서울시, 송파구청장)	<공장부지 수용 사업인정 고시 취소 청구> - 제소일 : '16.3.4.	- 1심 원고 패소 - 2심 피고 승소 - 상고심 피고 승소 종결 ('19.2.28.)
5	행정 - 공장부지	사용 불허처분 취소심판 (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) ▶청구인 : (주)삼표산업 ▶피청구인 : 송파구	<공유재산 사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> - 제소일 : '20.10.13.	- 취소심판 기각재결 ('20.12.21)
6	행정 - 공장부지	수용재결취소 (대법원2023두31867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서울시지도위, 송파구	<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> - 제소일 : '20.8.21.	- 1심 일부 원고 승소 - 2심 피고 승소 - 상고심 피고 승소 종결 ('23.4.27.)

- 또한, 서울시 및 송파구와 (주)삼표산업은 무단점유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인도, 공유재산 불허 처분 취소,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중이며, 해당 소송들 역시 서울시와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(주)삼표산업이 항소하면서 각각 2심과 3심이 진행 중임.

< 서울시 및 송파구와 (주)삼표산업 진행중인 쟁송현황 >

연번	구분	사건명/당사자	사건 내용	진행상황
1	민사 - 공장부지	토지인도 (서울고등법원2022나2032833) ▶원고 : 서울시, 송파구 ▶피고 : (주)삼표산업	<무단점유 공장부지 인도 청구> - 제소일 : '20.8.31. - 사용불허한 공장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인도 청구	- 1심 원고 승소('22.7.21.) - 2심 진행 중
2	행정 - 공장부지	사용 불허처분 취소소송 (서울고등법원2022누54391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송파구	<공유재산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 청구> - 제소일 : '21.3.16. - 피청구인의 공장부지 사용 불허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	- 1심 피고 승소('22.6.24.) - 2심 피고 승소('23.6.1.) - 3심 진행 중
3	행정 - 공장부지	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(서울고등법원2022누63265) ▶원고 : (주)삼표산업 ▶피고 : 송파구	<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 송 청구> - 제소일 : '21.5.20. - 삼표공장 부지 무단사용 변상 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	- 1심 피고 승소('22.9.15.) - 2심 진행 중

다.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 관련

- 동 청원을 통해 주민들이 보행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곳은 올림픽대교 남단의 풍납토성과 송파세무서를 횡단할 수 있는 강동대로임.
- 강동대로는 왕복 10차선의 간선도로로서 풍납동에서 서울아산병원 및 그 인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풍성초·중학교, 풍납중학교, 잠실고등학교 등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,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함.



- 해당 지역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(제303회 정례회, 2021.12월)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청원 운영규칙」 제4조제3호에 따르면,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해당 청원은 기존 청원과 달리 삼포레미콘 즉각 퇴거 요청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타당하다 하겠음.

- 이에 송파구에서는 ‘강동대로(풍납동~아산병원) 육교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’ 용역을 시행(2022.3월~12월)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(2022.11.10.)받았음.
- 심의 결과,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(사적분과)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면 풍납토성 경관이 훼손되므로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, 송파구 및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.
- 송파구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행육교를 북측으로 이격 설치하면,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운전자의 시거 확보에 불편함이 따르며, 이로 인해 안전사고 등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한편, 지난 6월 서울시·송파구·송파경찰서는 우리 위원회 김규남 의원의 요청으로 ‘강동대로 송파세무서 앞 횡단보도 설치’를 검토하였는데, 해당 위치는 올림픽대교 진·출입 연결구간과 인접하여 교통정체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.

라. 청원에 대한 의견

- 동 청원은 지난 6월 한가람로에서 풍납동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제출하게 된 것으로, 공장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(주)삼표산업의 레미콘 트럭이 협소한 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풍납동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.

- (주)삼표산업은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라 레미콘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2020년 서울시와 송파구로 이전되었고, 지속적인 소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와 송파구는 조속한 토지 인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.
- 또한, 해당 지점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 기제안된 청원에 따라 송파구청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문화재청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.
- 그러나 문화재청은 풍납토성의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보행육교를 50m 이격설치하라는 조건부 수용 결과를 내었고,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 및 사업의 경제성을 사유로 이를 철회하였음.
- 문화재청은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.

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

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15	접수연월일	2023. 8. 29.
청원인	주소	서울시 송파구 토성로	
	성명	김태형 외 1,684명	
소개의원	김규남	소속위원회	문화체육관광
건명	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포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		
소관위원회	문화체육관광		
<p>○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포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교통사고가 발생한 한가람로는 풍납동 소재 삼포레미콘 수송 대형트럭 통행이 빈번하며,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서, 풍납동 주민인 아산병원 교수의 사망사고가 난 곳이기도 함-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 보행육교 설치를 계속 요구했으나,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미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하면서,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- 이에 거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삼포레미콘의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요청하며,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청원함			